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운영규정

2004. 03. 01. 최초제정
 2007. 04. 01. 부분개정
 2008. 08. 29. 부분개정
 2010. 10. 14. 부분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원은 대전보건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원은 대학이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적극 봉사함으로써 교육의 기회평
 등과 평생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원은 대전보건대학(캠퍼스)에 둔다.

제2장 조직

제4조(원장) ①본원은 원장을 두며 원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교직원) 본원에 필요한 교직원을 두고, 원장의 명을 받아 교학업무를 관장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구성) ①본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육사업계획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삭제
3. 설치과정 및 교과목에 관한 사항
4. 학습인원 및 학습비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7.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사항
8. 삭제

제8조(회의 및 의결)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4장 설치과정

제9조(학습기간) 본원의 학습기간은 각 과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학습자는 수시로 모집한다.

제10조(학습일수) 본원의 주 학습일수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지원자격) 본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성인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과정 또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력·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선발방법) 본원의 학습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치과정상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설치과정 등) ①본원의 설치과정 및 학습인원은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②제1항의 설치과정과 학습인원 및 제14조의 학습비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삭제

⑤ 본원의 설치과정의 교·강사 위촉 및 강사료 지급에 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학습비) ①본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학습비의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장 평생교육기관 제23조(학습비의 반환 등)의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른다.

제14조의1(학습비 감면) ①평생교육원 일반과정 수강신청자 중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자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중복혜택은 받을 수 없다.

1. 본교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 교직원직계가족 및 특별대상자의 경우는 수강료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강좌별 감액비율은 최대 50%로 하며, 특별대상자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단, 학점은행제는 별도로 정한다.] <2010.10.14 개정>

②전항의 대상자는 해당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본 대학 재학증명서 1부.
2. 본 대학 졸업증명서 1부.
3. 추천서 1부 <별지 2호>
4. 기타 증빙서류

제15조(수료 및 수료증 교부) ①본원의 수료자는 각 교육과정에 설치된 개별 강좌의 70% 이상을 이수한 자로 한다.<개정 2007.04.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 <별지 제1호 서식>를 교부할 수 있다.

제5장 학습자 활동 및 포상

제16조(자치회) ①학풍을 진작하고 학습자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 과정마다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자치회는 각 과정마다 회장과 총무 각 1인을 둔다.

제17조(학습자 활동의 금지) 삭제.<개정 2007.04.01>

제18조(상벌) ①원장은 학습태도와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②원장은 학습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징계의 종류는 근신, 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제6장 재정

제19조(회계년도) 본원 회계년도는 대전보건대학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20조(예산편성) ①원장은 매년 12월 중 다음해 예산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본원의 학습비 등의 수입은 교비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21조(운영경비) 본원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학습비
2. 대전보건대학 보조금
3. 위탁훈련 지원금(위탁훈련시)
4. 기타수입

제22조(회계업무) 본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사항 및 회계업무는 대전보건대학 예산 회계업무 규정에 따라 본원에서 관장한다.

제7장 보칙

제23조(시행세칙) 이 원칙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이 원칙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학칙과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수료증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본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대전보건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장 ○○○○



대전보건대학 총장 ○○○○

[별표 1]

학습비 반환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23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가.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